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23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전용기 · 김우영 · 양부남
윤준병 · 이정문 · 유동수
임오경 · 허성무 · 송영길
최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약류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어 화약류 제조·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화약류와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이는 현행법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주로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화약류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제22조 및 제2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이하 “위험시설”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정소방대상물의”를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로, “대상물에”를 “대상물 및 시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소방대상물의”를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정소방대상물의”를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정소방대상물의”를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정소방대상물의”를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정소방대상물을”을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정소방대상물의”를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

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⑤ (생략)</p> <p><u><신 설></u></p>	<p>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3항의 화약류 또는 「<u>위험물 안전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이하 “<u>위험시설</u>”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p> <p>① <u>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u>은 그 <u>대상물에 설치되어</u>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p>	<p>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p> <p>① <u>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u>-----<u>대상물 및 시설에</u>-----</p> <p>-----</p> <p>-----</p> <p>-----</p> <p>-----</p> <p>-----</p> <p>-----</p> <p>-----</p>

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생략)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

-----.

⑤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

-----.

⑥ (현행과 같음)